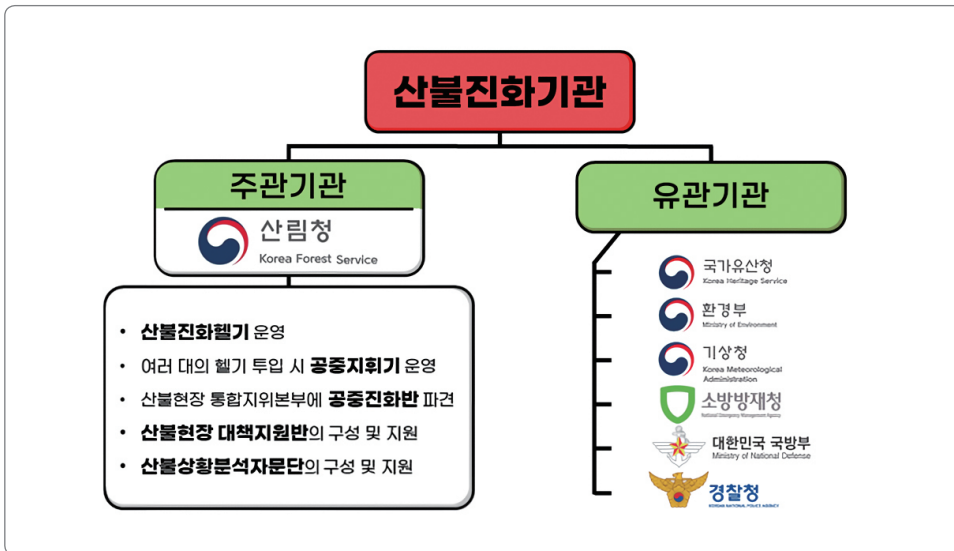


Q7 | 산림청이 산불재난 주관기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서는 “산불진화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기관”이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산불진화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국방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의 총 6개 부처이며 「산림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때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담당한 역할별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에 따라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 주관기관으로 산림청이 수행하는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불진화기관 및 산림청의 임무와 역할